



제 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지식농업인 육성 근거 마련〉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42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지식농업인 육성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6.
3. 회 부 일 : 2025. 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기술·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신지식농업인 육성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훈령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지식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신지식농업인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지식농업인”이라 한다)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15호)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IMF 구제금융 극복 및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각 부처별로 ‘신지식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신지식인 선발 및 운영업무는 2003년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동 업무를 각 부처로 이관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포상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

2026년 현재 정부 부처 차원에서 신지식인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신지식농업인) 및 해양수산부(수산신지식인)의 두 곳이며, 그 밖의 신지식인 선정은 한국신지식인협회 등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신지식인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의2²⁾에 따라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어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지식인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훈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과 예산확보, 정책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개정안은 신지식농업인 선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여 신지식인의 선정·육성 및 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법 체계에서도 신지식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9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u>농업 인력 육성</u> ,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u> 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u>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u> 을 세워야 한다.	
3.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u>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u>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신지식농업인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신지식농업인의 경우 지난 약 26년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498명의 신지식인이 선정³⁾되었으며, 지식농업 확산 지원을 위해 각종 농업인 교육사업 추진시 우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선정 신지식농업인 선정사유]

성명	지역·성별·나이	특 징
한OO	인천 강화·남·35	'초록통쌀가공장치' 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산업발전에 기여
최OO	충남 홍성·남·37	딸기품종 개발 및 수출확대로 K-딸기 수출기반 마련
김OO	전북 익산·남·40	국산 작두콩을 활용, '커피대용품'을 개발, 국산농산물 소비활성화에 기여
김OO	경북 안동·남·49	전통장류제품을 개발, 장류소비 및 국산농산물 소비활성화 기여
박OO	경북 경산·남·68	고품질 '우리흑돈' 품종을 개량·개발, 흑돈산업 부흥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이OO	경북 상주·남·41	'만풍배' 수출전문단지 조성, 배 수출시장 활성화 도모
백OO	경남 합천·남·69	국화와 수국을 활용 침출차를 개발, 농가소득 증대와 차산업 발전에 기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⁴⁾

3) 참고자료 1

4)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

문 의 처
02)6788-5415

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참고 1

신지식농업인 선발 현황(498명)

연도 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경기도	47	5	2	4		1		2			61
강원도	34			2			1				37
충청북도	35	2	1	1	1	1		1	1		43
충청남도	35	1		1			1			1	39
전라북도	42		2	2	1		3	2	2	1	55
전라남도	78	5	3	2	2	2	1		1		94
경상북도	52	3	6	3	2	1	1		1	3	72
경상남도	45	1	1	3	1	2	1		2	1	57
제주도	14		1	2			1	1	1		20
서울	3										3
인천	1									1	2
광주		1									1
대구	6										6
대전	5										5
부산	1										1
울산	2										2
합계	400	18	16	20	7	7	9	6	8	7	498

* 사망자 : 17명(서울1, 경기2, 전남1, 전북4, 경북3, 경남4, 충남1, 세종1)